

●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15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고지 등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나.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3장 강제징수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7.21.~8.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신용*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자매로 **	191031684 외 11건	14,483,890	국유재산사용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